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11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박수영 · 이인선 · 김재섭
조지연 · 박충권 · 광규택
유상범 · 김승수 · 엄태영
유용원 · 최보윤 · 안철수
이종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그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6년 12월 31일”로, “200만원을”을 “200만원,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00만원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